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 〉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47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03. 10.

3. 회부연월일 : 2026. 03. 1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시설이나 사업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한해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수 체계나 기준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가 책정되고 있는 실정임.

소속 기관에 따라 보수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며,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원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 기관 간 보수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생 략)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순경부터 경위까지의 계급별 경찰공무원 보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봉급표 및 각종 수당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반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청원경찰 시행령」[1] 및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소 기준이 적용되나 보수 체계나 수당 기준 등은 각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비 업무를 수행함에도 기관별 보수 수준 및 처우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의 통일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소속별 청원경찰 현황>

('26년 3월 기준)

구분	총 계	국가·지자체	국가·지자체 외		
			소계	공공기관[2]	민간분야
시설	1,564개소	1,285개소	279개소	66개소(19개 기관)	213개소
인원	12,035명	8,956명	3,079명	1,307명	1,772명

자료: 경찰청

1) 「청원경찰 시행령」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청원경찰 시행령」 제10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 한국수력원자력공사 683명, 수자원공사 237명, 한국가스공사 152명 등

<국가·지자체 / 공공기관 보수관련 규정>

<국가·지자체> (봉급)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재직기간별 순경~경위 봉급표를 적용해 정액 지급 (수당) 「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경비기준액 고시 제1호다목에 따라 정근수당·초과근무수당 등 9종 수당 지급 ※ 규정 외 수당은 자체 예산 편성 범위 안에서 지급 <공공기관> (봉급)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제2호 가목에 따라 순경 봉급을 최저부담기준액으로 지급 (수당) 감독자 직책 수당 외 수당은 사업장 자체 내규 등에 따라 지급

자료: 경찰청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비 업무를 수행함에도 소속 기관에 따라 보수 수준 및 처우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청원경찰은 국가 중요시설 등에 배치되어 보안 유지 및 시설 방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직무의 공공성이 인정됨에도 보수 체계가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직무의 유사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이러한 격차는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지적됨.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보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 대상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한 보수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수체계의 편차를 완화하고 청원경찰 처우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특히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자격요건과 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어 국가 중요시설 등의 보안 유지 및 시설 방호 업무를 수행하는바, 직무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한 보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따른 보수 체계>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현 행</th><th rowspan="2">개정안</th></tr>
<tr><th>국 가· 지자체</th><th>국가 · 지자체 외
※ 공공기관 · 민간</th></tr>
<tr><td rowspan="4">봉급</td><td>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급)</td><td rowspan="4">1년 ~ 31년
(순경)</td><td rowspan="5">공공기관 근무
청원경찰은
국가 · 지자체
청원경찰과
같은 기준 적용</td></tr>
<tr><td>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급)</td></tr>
<tr><td>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급)</td></tr>
<tr><td>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급)</td></tr>
<tr><td>수당</td><td>공무원
보수규정</td><td>사업장
내부규칙</td></tr>
</table>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 및 예산 운영 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총인건비 제도의 적용을 받아 인건비 총액이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바, 법률로 특정 직종의 보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기관별 예산 편성 및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제한된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청원경찰 보수 기준만 법률로 상향·고정할 경우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나 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바,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관리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공공기관별 재정 여건 및 운영 구조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기관 유형에 따라 재정 구조와 수익 기반에 차이가 존재하는바[3], 개정안에 따라 보수 기준이 상향될 경우 기관별로 재정 부담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자체 수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3)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table>
<tr><th colspan="2">유형구분</th><th>공통요건</th><th>지정요건(원칙)</th></tr>
<tr><td rowspan="2">공기업</td><td>시장형 공기업</td><td rowspan="2">직원정원 ≥ 300인
총수입액 ≥ 200억원
자산 ≥ 30억
자체수입비율 ≥ 50%</td><td>자체수입비율 ≥ 85%인 기관
(& 자산2조원이상)</td></tr>
<tr><td>준시장형 공기업</td><td>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td></tr>
<tr><td rowspan="2">준정부기관</td><td>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td><td rowspan="2">직원정원 ≥ 300인
총수입액 ≥ 200억원
자산 ≥ 30억
자체수입비율 < 50%</td><td>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td></tr>
<tr><td>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td><td>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td></tr>
<tr><td colspan="2">기타공공기관</td><td colspan="2">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td></tr>
</table>

기관의 경우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바,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기관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이나 탄력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경찰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현재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오히려 기존 처우 수준이 하향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4